

'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심사보고서

1993. 5. .
행정재무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 1993年 4月 13日 區廳長提出
- 나. 回附日字 : 1993年 4月 20日 回附
- 다. 上程日字 : 第17回 永登浦區議會(閉會中) 第2次 委員會(1993年 5月 24日) 上程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財務局長 梁大雄)

가. 提案理由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에 의거 '93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키 위한 것임.

나. 主要内容

새로운 행정수요와 관련하여 노인복지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재산취득과 대부분 20년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필지 점유자 중 매수를 희망하는 자에게 수의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3. 專門委員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姜性熙)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승인요청한 '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총 26건중 3건은 구유재산(동청사 및 복지관부지)의 매입이고, 기타 23건은 소규모 구유재산(대지)의 매각에 관한 사항으로

가. 매 입

1) 현 영등포2동사무소는 협소하고 노후하여 원활한 민원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적정규모의 새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청사부지 관내 영등포 2가 222번지(구 시립병원) 소재 사유지중 일부인 990.6㎡는 입지조건상

적합하며,

2) 당산2동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관내 당산동 4가 57번지 소재 대지 105.8㎡와 양평동 복지관 건립을 위한 관내 양평동 5가 71-2번지 소재 대지 383.3㎡는 입지조건상 적합하며 복지사회건설을 지향하는 정부시책의 구현이란 측면에서 보나 오늘날 핵가족시대 상황에서 노인복지문제 해결과 탁아시설 등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관 건립부지의 매입은 시급을 요한다고 사료됨.

나. 매 각

문래1동 3가 16-34(3.37㎡)의 22건의 구유지 매각에 관한 사항은 매수신청이 오래전부터 자신의 가족부지의 일부이거나 울타리안에 점유해온 소규모 구유지로서, 그 보존가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뿐 아니라 점유구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우리구 재정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에게 매각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果 : 원안 가결

'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안 번호	163
----------	-----

제출년월일 : 1993. 4. 1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1항에 의거 '93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키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새로운 행정수요와 관련하여 노인복지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재산취득과 대부분 20년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필지의 점유자 중 매수를 희망하는 자에게 수의 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9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계상 재산
 - 취 득 1건 1필지 105.8㎡
 - 매 각 19건 20필지 847.37㎡

199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6-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 성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1	대지	영등포구 당산2동 4가 57번지	105.8	130,000	상반기	노인 복지관 건립	영등포구 당산동 4가 57번지(고기조)	
2	대지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222번지	990.6		상반기	영등포2동 청사 건립신축부지	서울특별시	
3	대지 (건물)	영등포구 양평동 5가 71-2호	383.3 370.38	713,400	상반기	복지관 건립 신축부지	영등포구 양평동5가 71-2호(최정자)	

1993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6-4)

관리청명 : 영등포구

회 계 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매각 대상 수량	과 표 또 는 평가액	매각 시기	매 각 사 유	매 수 회 망 자 주 소 · 성 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량						
1	대지	문래1동 3가 16-64	14.4	3.37	3,670	상반기	신청인의 주거용 건물과 담장안에 위치	영등포구 문래동 3가 16-64 김양선	
2	〃	대림3동 604-147	63	5	4,450	〃	신청인의 주거용 건물과 점유 사용하고 있음	영등포구 대림동 604-147 김재곤	
3	〃	604-130 대림3동 603-5	10 69	79	70,310		신청인의 주거용 건물로 점유 사용하고 있음	영등포구 대림3동 604-130 모예심	
4	〃	영등포1동 631-51	38	38	39,900	〃	신청인의 주거용 건물과 담장안에 위치	영등포구 영등포동 620 한달우	
5	〃	양평2동 5가 66-5	45	8.4	13,270	〃	신청인의 주거용 건물과 담장 안에 위치	영등포구 양평동5가 88-5 이상집	
6	〃	신길1동 120-49	59	59	71,300	〃	신청인의 주거용 건물과 담장안에 위치	영등포구 신길동 463-2 안계호	
7	〃	신길2동 195-10	36	36	39,240	〃	신청인의 주거용 건물과 담장안에 위치	영등포구 신길동 95-121 이삼득	
8	〃	대림3동 603-12	93	93	82,770	〃	신청인의 주거용 건물로 점유 사용	영등포구 대림동 603-12 재호기	

1993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6-4)

관리청명 : 영등포구

회 계 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매각 대상 수량	과 표 또 는 평가액	매각 시기	매 각 사 유	매 수 회 망 자 주 소 · 성 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9	대지	신길1동 8-54	11	11	9,050	상반기	신청인의 주거용 건물과 담장안에 위치	영등포구 신길동 8-27 박병호	
10	〃	신길2동 162-23	13	13	21,710	〃	신청인의 주거용 건물과 담장안에 위치	영등포구 신길동 162-8 성덕재	
11	〃	신길2동 171-46	23	23	20,000	〃	신청인의 주거용 건물과 담장안에 위치	영등포구 신길동 184-13 박송용	
12	〃	신길2동 171-47	50	50	43,600	〃	신청인의 주거용 건물과 담장안에 위치	영등포구 신길동 182-16 김정일	
13	〃	대림1동 906-109	131	40	41,600	〃	신청인의 가게로 점유 사용	영등포구 대림동 893-4 유봉룡	
14	〃	대림1동 906-109	131	19	9,950	〃	신청인의 가게로 점유 사용	영등포구 대림동 893-11 김기창	
15	〃	대림1동 906-109	131	55	54,000	〃	신청인의 가게로 점유 사용	영등포구 대림동 893-8 최건우	
16	〃	신길1동 114-51	19	19	19,390	〃	신청인의 주거용 건물과 담장안에 위치	성남 수정 태평동 3448-7 박정철	
17	〃	신길3동 262-80	5	5	9,350	〃	신청인의 주거용 건물 및 가게로 점유 사용	영등포구 신길동 233-11 조연제	
18	〃	대림3동 604-131	106	106	94,340	〃	신청인의 주거용 건물로 점유사용	영등포구 대림동 604-131 이해중	
19	〃	신길6동 475-2	184.6	184.6	221,520	〃	신청인의 주차장으로 점유사용	동작구 대방동 395-2 안성기	
20	〃	신길5동 342-146	27	15	17,250	〃	신청인의 주거용 건물과 담장안에 위치	영등포구 신길동 422-10 김정의	
21	〃	신길5동 342-146	27	12	13,800	〃	신청인의 주거용 건물과 담장안에 위치	영등포구 신길동 310-38 황인환	
22	〃	신길1동 8-52	18	18	15,768	〃	신청인의 주거용 건물과 담장안에 위치	영등포구 신길동 8-16 조경목	
23	〃	신길3동 223-63	36	36	50,400	〃	신청인의 주거용 건물과 담장안에 위치	영등포구 신길동 224-24 현 숙	

재산위치도·토지대장등 관련공부 목록

구	분	목	록	비	고
	취	득 - 1)	당산2동 노인복지관 신축부지 취득		
	매	각 - 1)	사유주택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매	각 - 2)	사유주택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매	각 - 3)	사유주택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매	각 - 4)	사유주택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매	각 - 5)	사유주택과 담장안에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매	각 - 6)	사유주택과 담장안에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매	각 - 7)	사유주택과 담장안에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매	각 - 8)	사유주택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매	각 - 9)	사유주택과 담장안에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매	각 - 10)	사유주택과 담장안에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매	각 - 11)	사유주택과 담장안에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매	각 - 12)	사유주택과 담장안에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매	각 - 13)	사유주택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매	각 - 14)	사유주택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매	각 - 15)	사유주택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매	각 - 16)	사유주택과 담장안에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매	각 - 17)	사유주택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매	각 - 18)	사유주택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매	각 - 19)	신청인의 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연 번 : 1

(취 득 대 상 재 산 현 황)

1. 재산의 표시 및 신청인

(단위 : m')

재 산 의 표 시			취 득 상 적	소 유 자		비 고
소 재 지	지목	면적		주 소	성 명	
당산동4가 57	대지	105.8	105.8	영등포 당산동4가 57	고 기 조	

2. 재산 관리 현황

관 리 상 태 (현 용 도)	취 득 후 용 도	비 고
당산동 4가 57번지(고기조) 사유재산	노인 복지관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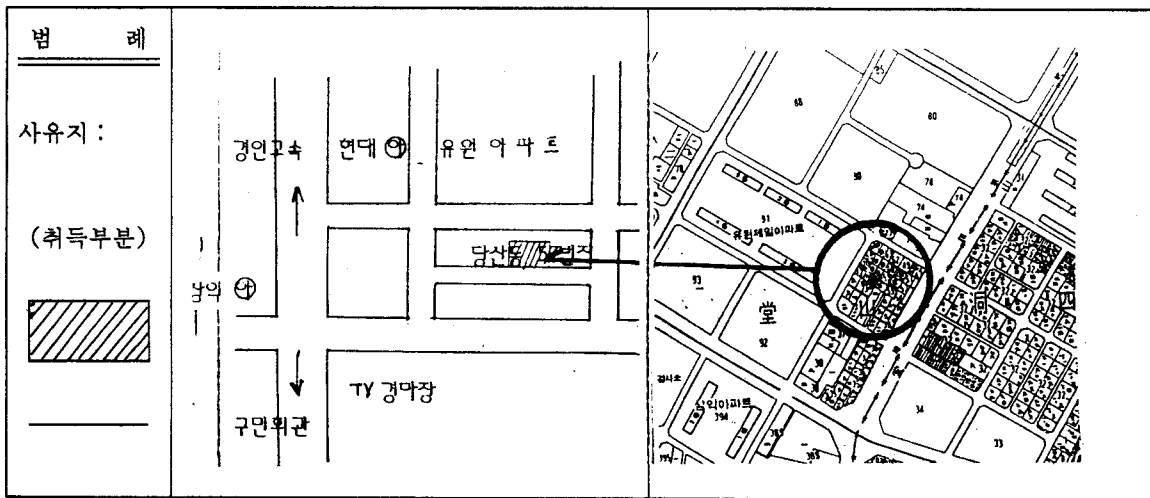
3. 취 득 사 유

- 도시 영세민 노인들의 여가선용 장소 제공
- 저소득층의 지역사회 청소년에게 학습장(공부방) 제공

4. 소 요 예 산

130,000,000원(1억3천만원)

5. 현 황 도



연 번 : 2

(취득대상재산현황)

1. 재산의 표시 및 소유자

(단위 : m²)

재산의 표시			취득 대상 면적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영등포동2가 222	대지	7446.3	990.6	서울특별시	

2. 재산 관리 현황

관리 상태 (현 용 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공사현장 부대시설 (자재적치, 숙소)로 사용	준주거지역 및 주차장 정비지구로 15m 및 8m 도로에 접함. 공용의 청사 입안지	

3. 취득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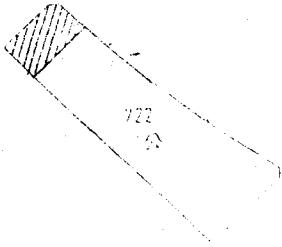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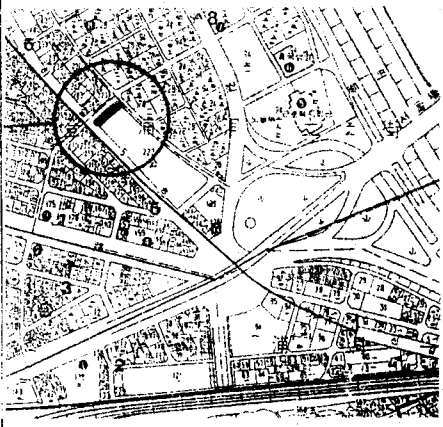
- 현청사 사무실 면적 절대부족으로 민원편의 및 사무능률 향상.
- 노후 협소한 현재의 영등포2동 청사를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신축부지의 취득.

4. 소요 예산

5. 취득 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6. 현황도

<p>법 례</p> <p>공유지:</p> <p>점유부분: (매각부분)</p>  <p>담장선:</p> 		
--	---	--

연 번 : 3

(취 득 대 상 재 산 현 황)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 신청인 (단위 : m')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대 상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주 소	성 명	
양평동5가 71-2	대지	383.3	383.3	양평동5가 71-2	최 정 자	
	건물	370.38				

2. 재산 관리 현황

관 리 상 태 (현 용 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2개동으로된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1개동은 사무실, 점포 다른 1개동은 주택	준공업지역 및 주차장 정비지구로 6m에 도로에 접함. 해태제과 인접지	

3. 취 득 사 유

- 도시영세민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청소년들의 학습공간 제공.
- 맞벌이 부부들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영·유아의 건전교육장소 제공.

4. 소 요 예 산

- 추정가액 7,134,000천원

5. 취 득 근 거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6. 현황도

<p>범 례</p> <p>공유지 :</p> <p>점유부분 : (매각부분)</p> <p> 담장선 :</p>	
---	--

연 번 : 1

(매 각 대 상 재 산 현 황)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단위 : m²)

재 산 의 표 시			매 대 상 면 적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주 소	성 명	
문래동 3가 16-64	대지	14.4	3.37	영등포 문래동 3가 16-64	김 양 선	공유지분

2. 재산 관리 현황

관 리 상 태 (현 용 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점유인의 담장안에 점유	준공업지역으로 6m 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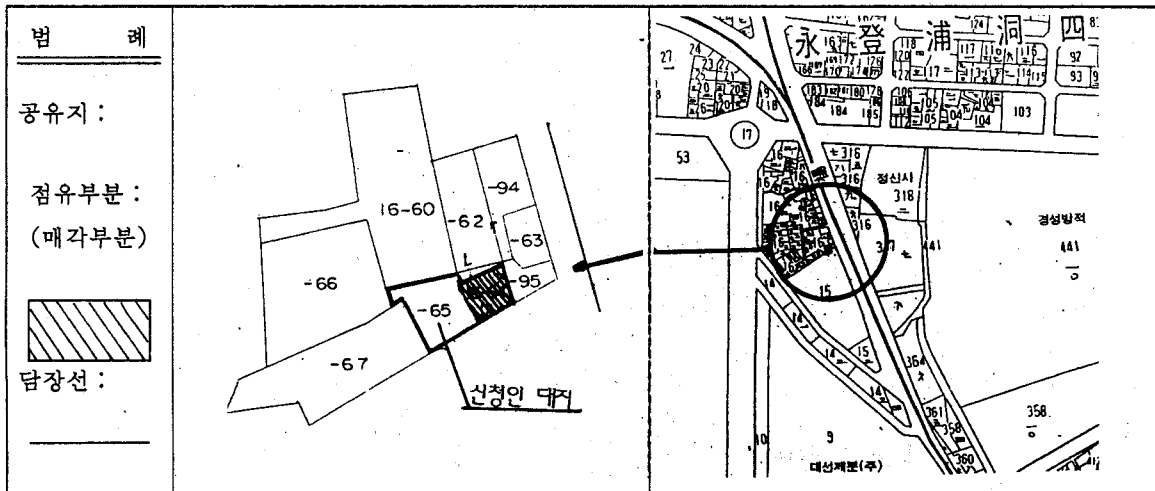
3. 매 각 사 유

- 상기 구유 재산을 매수신청인(김양선)이 주거용 건물 및 담장안에 점유 사용
- 20년 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음(주택은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
- 점유자가 신축코자 매수 신청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호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호

5. 현 황 도



연 번 : 2

(매 각 대 상 재 산 현 황)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단위 : m²)

재 산 의 표 시			매 각 대 상 면 적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주 소	성 명	
대림동 604-147	대지	63	5	영등포 대림동 604-147	김 재 곤	공유지분

2. 재산 관리 현황

관 리 상 태 (현 용 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점유인의 주거용건물 및 담장안에 점유	준공업지역으로 4m 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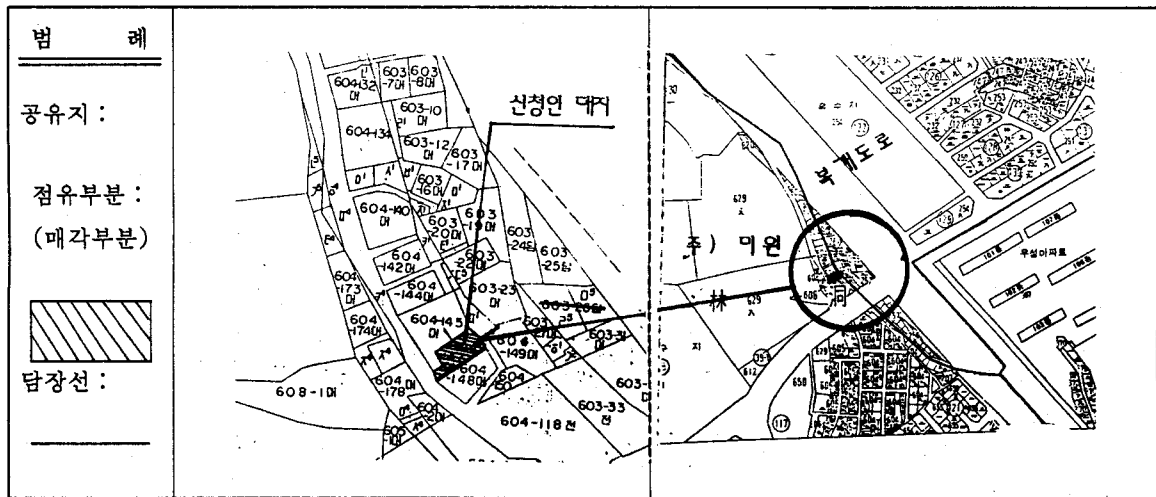
3. 매 각 사 유

- 상기 구유 재산은 매수신청인(김재곤)의 주거용 건물 및 담장안에 점유 사용
- 20년 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음
- 점유자가 신축코자 매수 신청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호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호

5. 현 황 도



연 번 : 3

(매 각 대 상 재 산 현 황)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단위 : m²)

재 산 의 표 시			매 각 대 상 면 적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주 소	성 명	
대림동 604-130	대지	10	79	영등포 대림동 604-130	모 예 심	
603-5		69				

2. 재산 관리 현황

관 리 상 태 (현 용 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점유인의 주택, 담장안에 위치하고 있음	준공업 지역으로 2m 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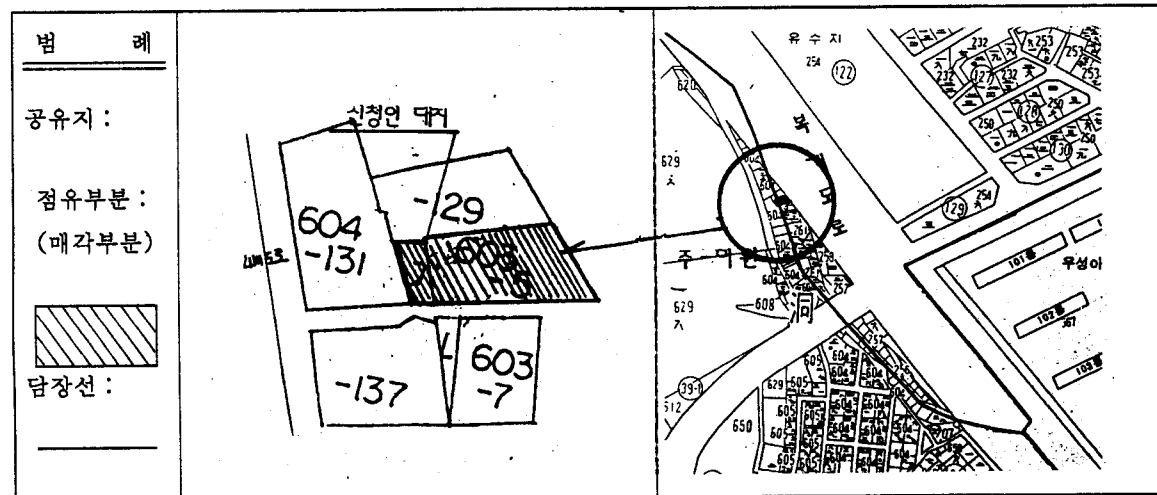
3. 매 각 사 유

- 상기 구유 재산을 매수신청인(모예심)의 주거용 건물 및 담장안에 점유 사용
- 20년 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음(건물은 특정 건축물대장에 등재)
- 점유자가 신축코자 매수 신청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호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호

5. 현 황 도



연 번 : 4

(매 각 대 상 재 산 현 황)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단위 : m²)

재 산 의 표 시			매 각 대 상 적 면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주 소	성 명	
영등포동 631-51	대지	38	38	영등포 영등포동 620	한 달 우	

2. 재산 관리 현황

관 리 상 태 (현 용 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점유인의 담장안에 점유 사용	일반주거 지역으로 4m 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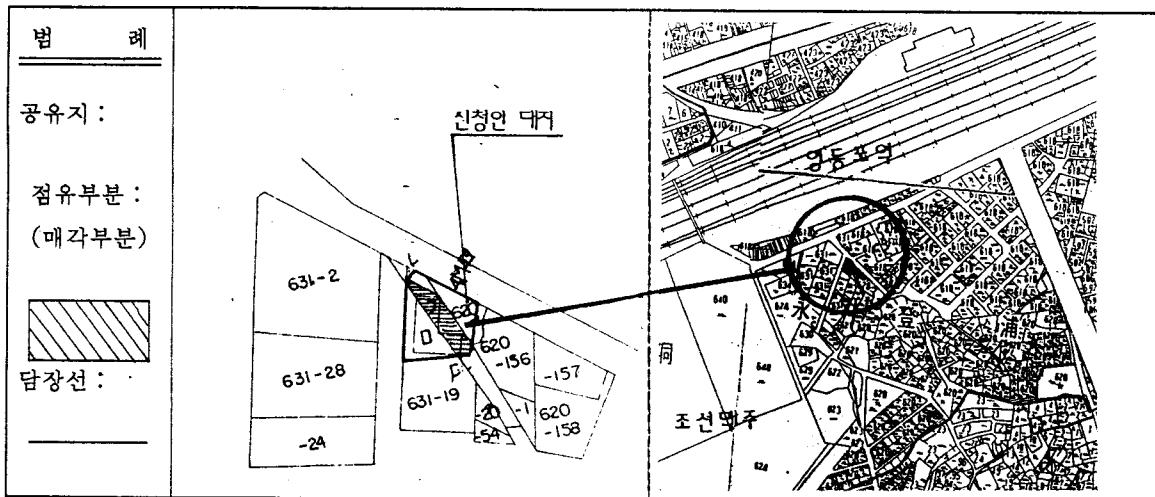
3. 매 각 사 유

- 상기 구유 재산을 매수신청인(한달우)이 주거용 건물 및 담장안에 점유 사용
- 20년 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음(주택은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
- 점유자가 신축코자 매수 신청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호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2호

5. 현 황 도



연 번 : 5

(매 각 대 상 재 산 현 황)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단위 : m²)

재 산 의 표 시			매 각 대 상 적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주 소	성 명	
양평동 5가 66-5	대지	45	8.4	영동포 양평동 5가 88-5	이 상 집	

2. 재산 관리 현황

관 리 상 태 (현 용 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점유인의 담장안에 위치	준공업 지역으로 6m 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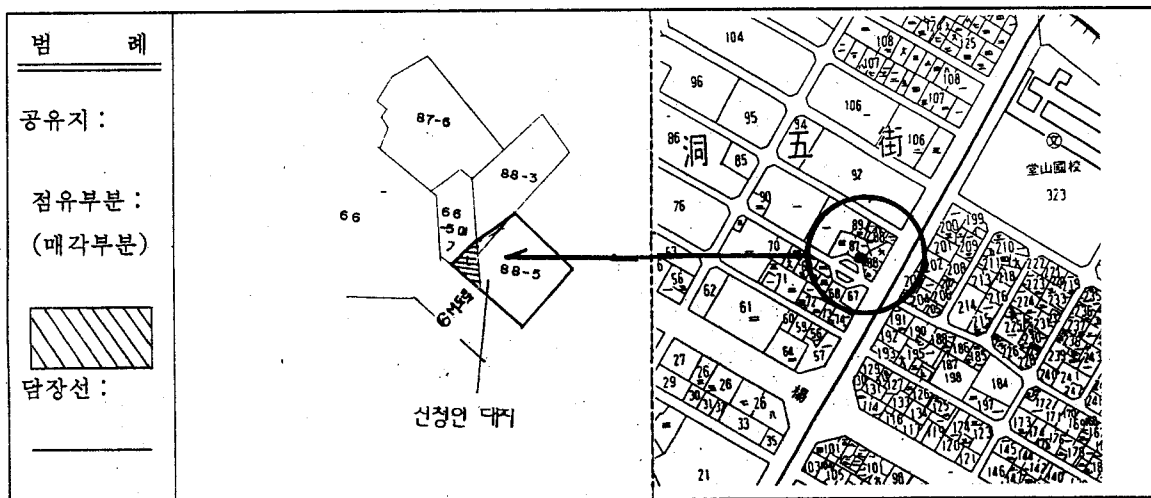
3. 매 각 사 유

- 상기 구유 재산을 매수신청인(이상집)이 주거용 건물 및 담장안에 점유 사용
- 20년 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음
- 점유자가 신축료자 매수 신청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호

5. 현 황 도



연 번 : 6

(매 각 대 상 재 산 현 황)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단위 : m²)

재 산 의 표 시			매 각 대 상 면 적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주 소	성 명	
신길동 120-49	대지	59	59	영등포 신길동 463-2	안 계 호	

2. 재산 관리 현황

관 리 상 태 (현 용 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주거용 건물과 담장안에 점유사용	일반 주거지역으로 12m 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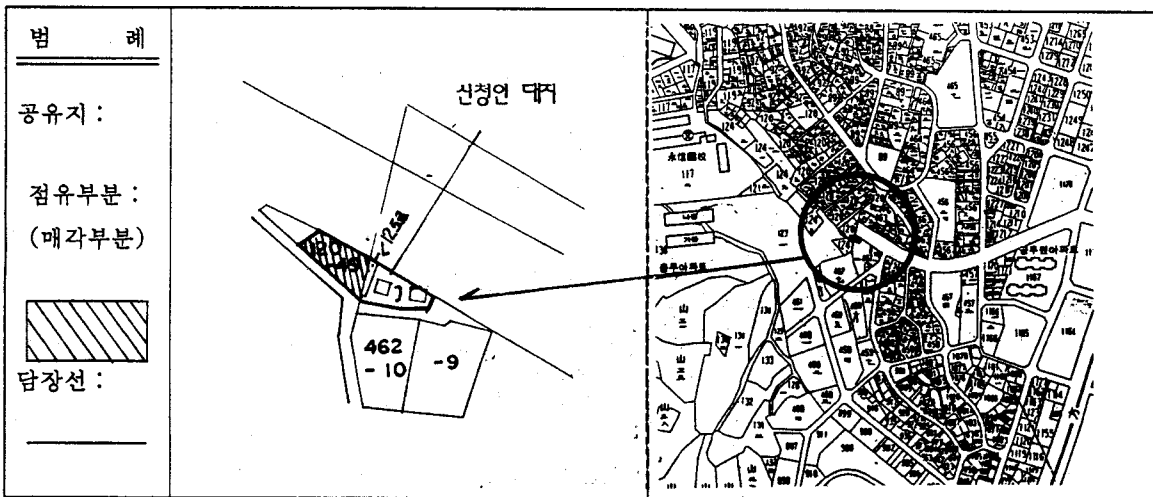
3. 매 각 사 유

- 상기 구유 재산을 매수신청인(안계호)이 주거용 건물 및 담장안에 점유 사용
- 20년 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음
- 점유자가 신축코자 매수 신청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호

5. 현 황 도



연 번 : 7

(매 각 대 상 재 산 현 황)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단위 : m²)

재 산 의 표 시			매 각 대 상 적 면 적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주 소	성 명	
신길동 195-10	대지	36	36	영등포 신길동 95-121	이 삼 득	

2. 재산 관리 현황

관 리 상 태 (현 용 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점유인의 주택으로 점유사용	일반 주거지역으로 8m 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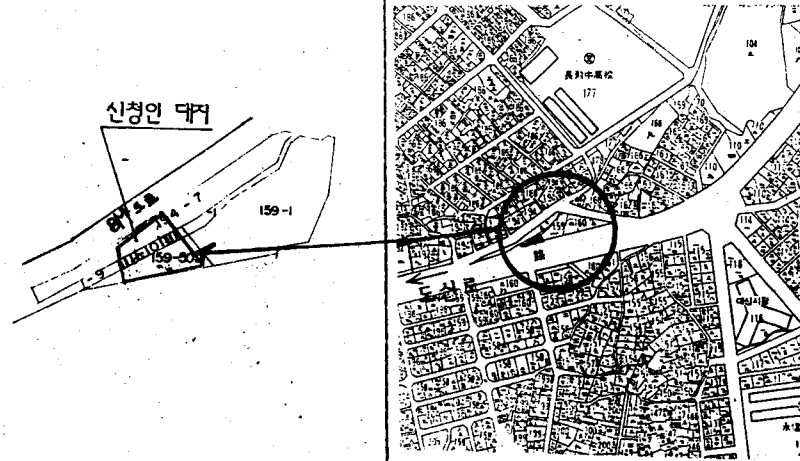
3. 매 각 사 유

- 상기 구유 재산을 매수신청인(이삼득)이 주거용 건물 및 담장안에 점유 사용
- 20년 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음
- 점유자가 신축코자 매수 신청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호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2호

5. 현 황 도

<p>범 례</p> <hr/> <p>공유지 :</p> <p>점유부분 : (매 각 부 분)</p> <p></p> <p>담장선 :</p> <hr/>	
---	--

연 번 : 8

(매 각 대 상 재 산 현 황)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단위 : m')

재 산 의 표 시			매 각 대 상 적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주 소	성 명	
대림동 603-12	대지	93	93	영등포 대림동 603-12	제 호 기	

2. 재산 관리 현황

관 리 상 태 (현 용 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점유인의 주택으로 점유사용	일반 주거지역으로 2m 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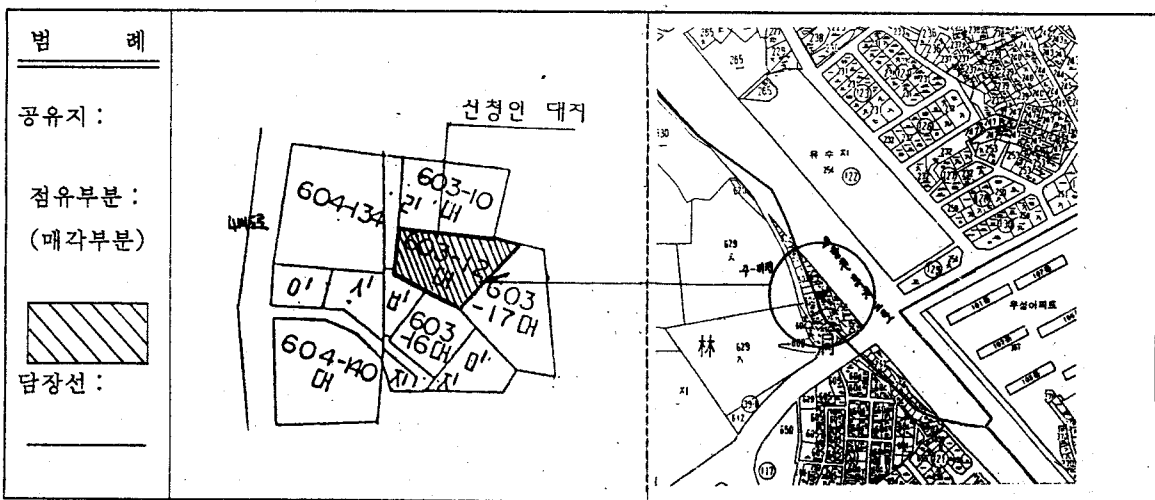
3. 매 각 사 유

- 상기 구유 재산을 매수신청인(제호기)이 주거용 건물 및 담장안에 점유 사용
- 20년 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음(주택은 특정건축물 신고 등재)
- 점유자가 건축요자 매수 신청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호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호

5. 현 황 도



연 번 : 9

(매 각 대 상 재 산 현 황)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단위 : m²)

재 산 의 표 시			매 각 대 상 적 면 적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주 소	성 명	
신길동 8-54	대지	11	11	영등포 신길동 8-27	박 병 호	

2. 재산 관리 현황

관 리 상 태 (현 용 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점유인의 주택으로 점유사용	일반 주거지역으로 6m 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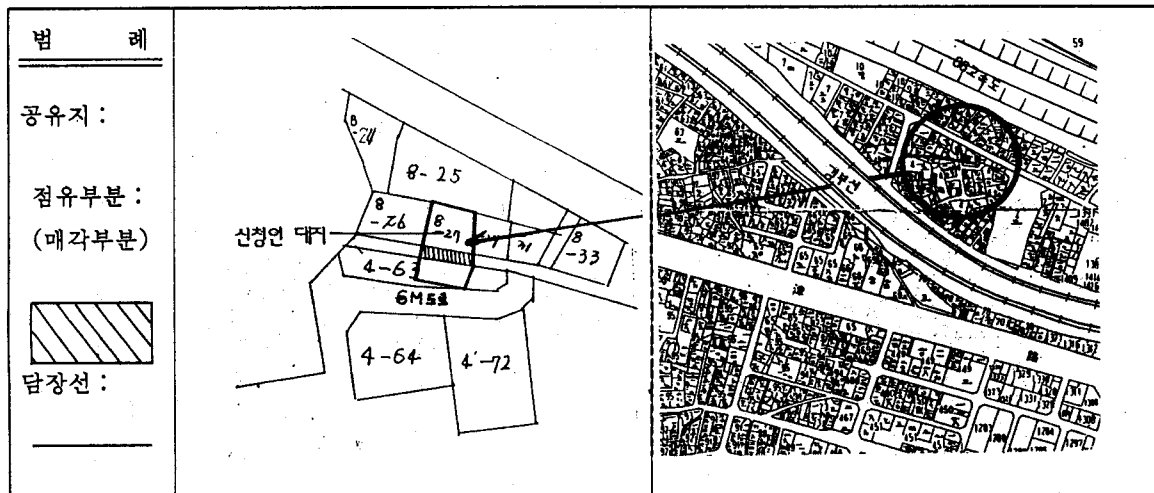
3. 매 각 사 유

- 상기 구유 재산을 매수신청인(박병호)이 주거용 건물 및 담장안에 점유 사용
- 20년 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음(주택은 특정 건축물 신고 등재)
- 점유자가 건축코자 매수 신청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호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2호

5. 현 황 도



연 번 : 10

(매 각 대 상 재 산 현 황)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단위 : m²)

재 산 의 표 시			매 각 대 상 적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주 소	성 명	
신길동 162-23	대지	13	13	영등포 신길동 162-8	성 덕 재	

2. 재산 관리 현황

관 리 상 태 (현 용 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점유인의 주거용건물로 점유 사용	일반 주거지역으로 8m 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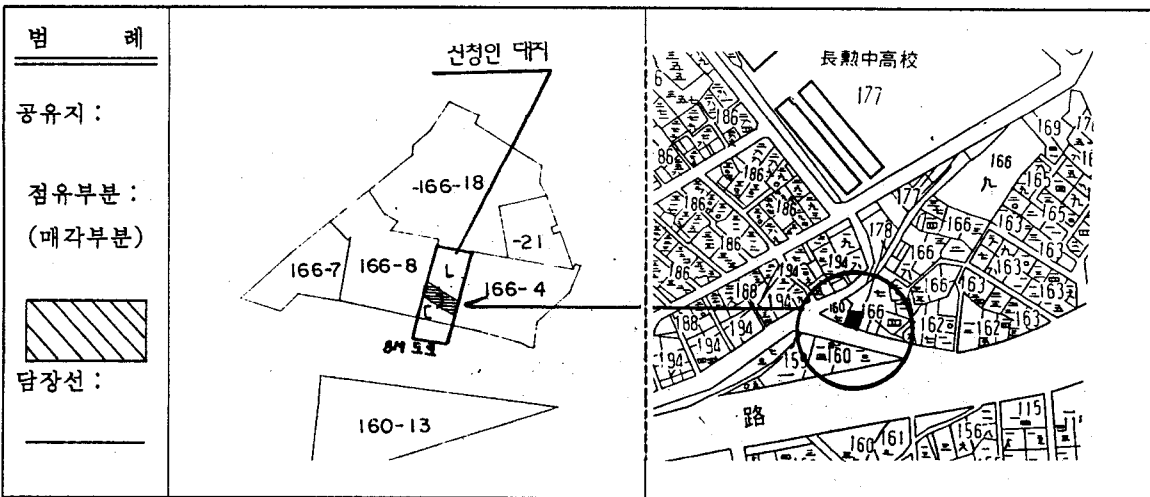
3. 매 각 사 유

- 상기 구유 재산을 매수신청인(성덕재)이 주거용 건물 및 담장안에 점유 사용
- 20년 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음
- 점유자가 신축코자 매수 신청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호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호

5. 현 황 도



연 번 : 11

(매 각 대 상 재 산 현 황)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단위 : m²)

재 산 의 표 시			매 각 대 상 적 면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주 소	성 명	
신길동 171-46	대지	23	23	영등포 신길동 184-13	박 송 응	

2. 재산 관리 현황

관 리 상 태 (현 용 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점유인의 주거용건물 및 담장안에 점유	일반 주거지역으로 4m 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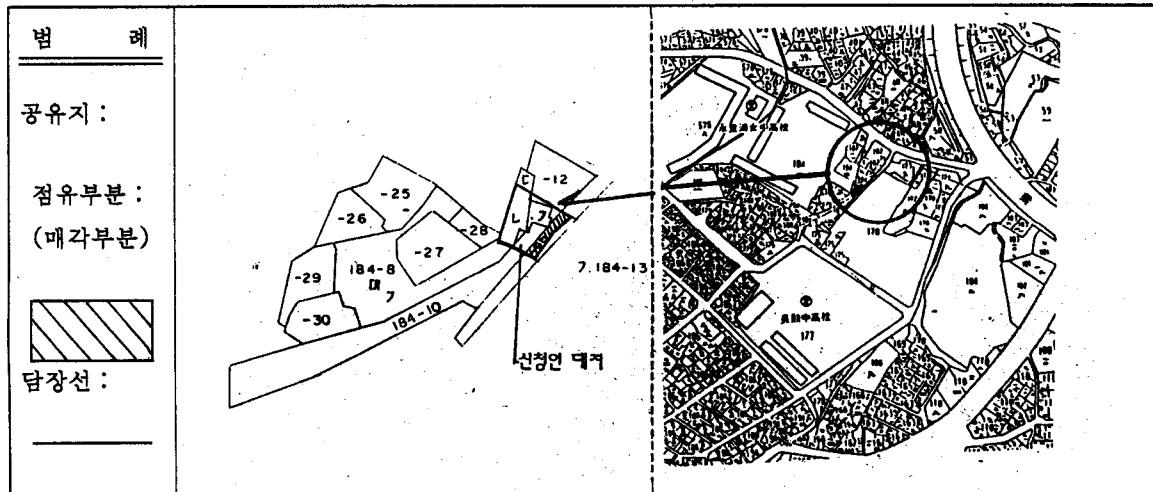
3. 매 각 사 유

- 상기 구유 재산을 매수신청인(박송응)이 주거용 건물 및 담장안에 점유 사용
- 10년 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음
- 점유자가 신축코자 매수 신청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호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2호

5. 현 황 도



연 번 : 12

(매 각 대 상 재 산 현 황)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단위 : m²)

재 산 의 표 시			매 대 면 적	매 상 적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소 재 지	지목	면적			주 소	성 명	
신길동 171-47	대지	50	50	영등포 신길동 182-16	김 정 일		

2. 재 산 관 리 현 황

관 리 상 태 (현 용 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점유인의 건물과 담장안에 점유	일반 주거지역으로 4m 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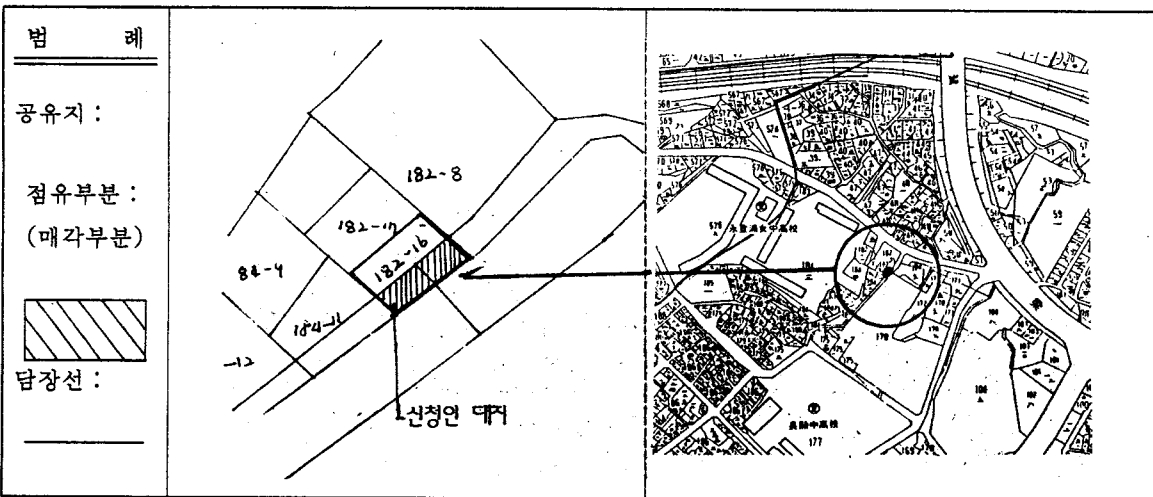
3. 매 각 사 유

- 상기 구유 재산을 매수신청인(김정일)이 주거용 건물 및 담장안에 점유 사용
- 20년 이상 점유 사용(건물 : 등기부 등재)
- 점유자가 신축코자 매수 신청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호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2호

5. 현 황 도



연 번 : 13

(매 각 대 상 재 산 현 황)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단위 : m²)

재 산 의 표 시			매 각 대 상 적 면 적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주 소	성 명	
대림동 906-109	대지	131	40	영등포 대림동 893-4	유 봉 룡	

2. 재산 관리 현황

관 리 상 태 (현 용 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점유인의 가게로 점유사용	일반 주거지역으로 6m 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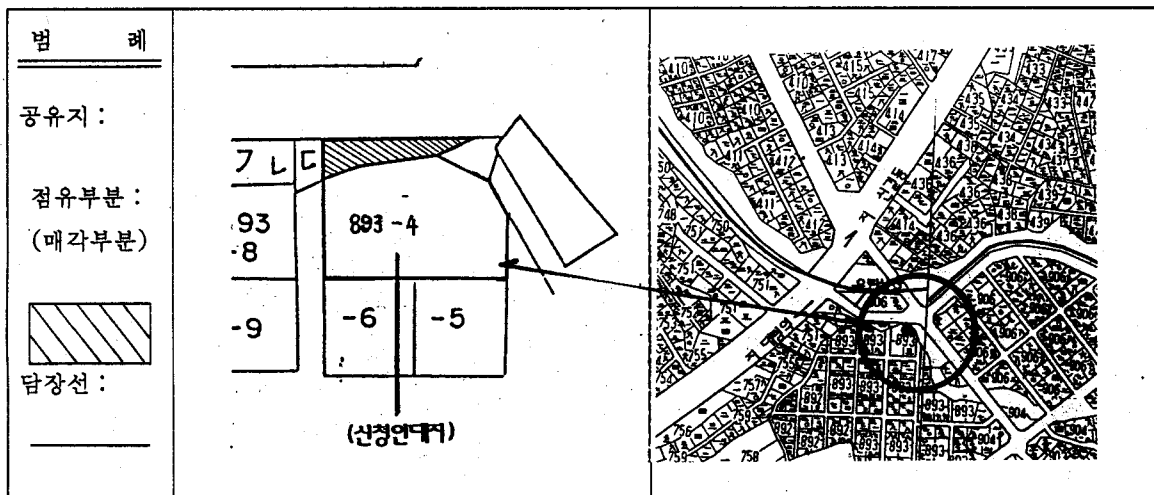
3. 매 각 사 유

- 상기 구유 재산을 매수신청인(유봉룡)의 가게로 점유 사용
- 15년 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음
- 점유자가 신축코자 매수 신청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2호

5. 현 황 도



연 번 : 14

(매 각 대 상 재 산 현 황)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단위 : m²)

재 산 의 표 시			매 각 대 상 적 면 적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주 소	성 명	
대림동 906-109	대지	131	19	영등포 대림동 893-11	김 기 창	

2. 재산 관리 현황

관 리 상 태 (현 용 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점유인의 가게로 점유사용	일반 주거지역으로 6m 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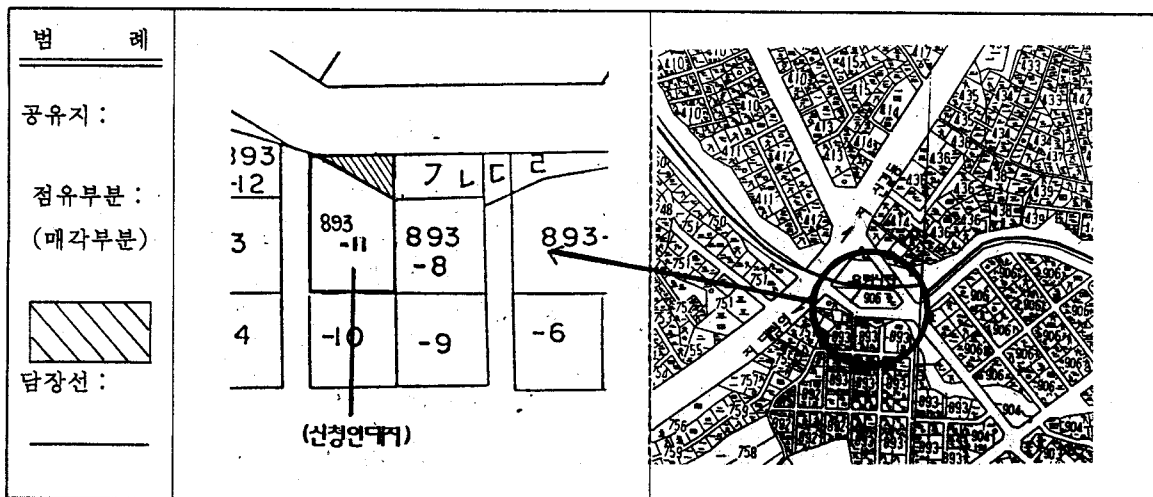
3. 매 각 사 유

- 상기 구유 재산을 매수신청인(김기창)이 가게로 점유 사용
- 15년 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음
- 점유자가 신축코자 매수 신청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2호

5. 현 황 도



연 번 : 15

(매 각 대 상 재 산 현 황)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단위 : m²)

재 산 의 표 시			매 각 대 상 면 적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주 소	성 명	
대림동 906-109	대지	131	55	영등포 대림동 893-8	최 건 우	

2. 재산 관리 현황

관 리 상 태 (현 용 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점유인의 가게로 점유사용	일반 주거지역으로 6m 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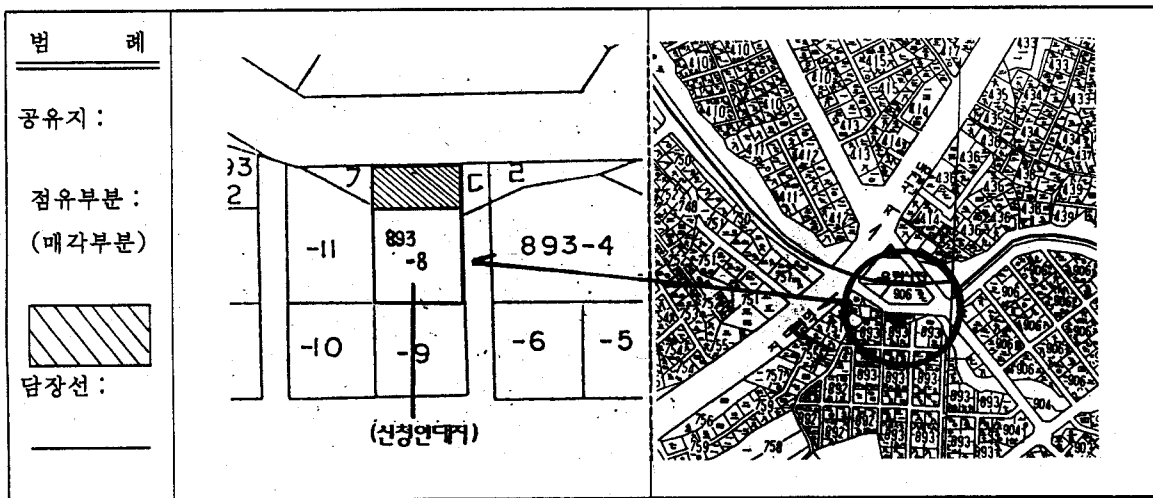
3. 매 각 사 유

- 상기 구유 재산을 매수신청인(최건우)이 가게로 점유 사용
- 15년 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음
- 점유자가 신축코자 매수 신청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호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2호

5. 현 황 도



연 번 : 16

(매 각 대 상 재 산 현 황)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단위 : m²)

재 산 의 표 시			매 대 대 면	각 상 적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주 소	성 명	
신길동 114-51	대지	19	19	성남 수정 태평동 3448-7	박 정 철		

2. 재산 관리 현 황

관 리 상 태 (현 용 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주거용 건물 및 담장안에 점유사용	일반 주거지역으로 4m 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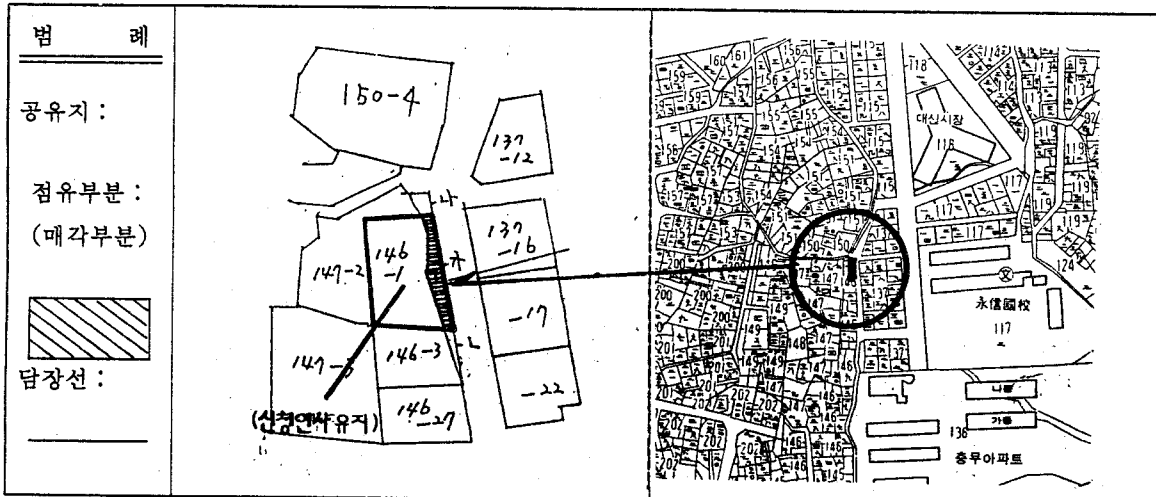
3. 매 각 사 유

- 상기 구유 재산을 매수신청인(박정철)이 주거용 건물 및 담장안에 점유 사용
- 20년 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음
- 점유자가 신축료자 매수 신청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호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2호

5. 현 황 도



연 번 : 17

(매 각 대 상 재 산 현 황)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단위 : m²)

재 산 의 표 시			매 대 상 적 면 적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소 재 지	지목	면적		주 소	성 명	
신길동 262-80	대지	5	5	영등포 신길동 233-11	조 연 제	

2. 재산 관리 현황

관 리 상 태 (현 용 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점유인의 주택 및 상가건물로 점유	일반 주거지역으로 12m 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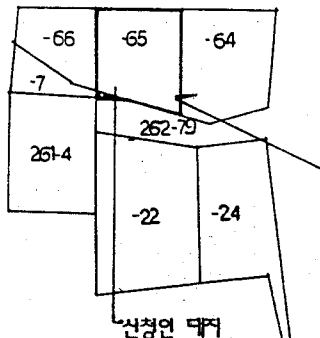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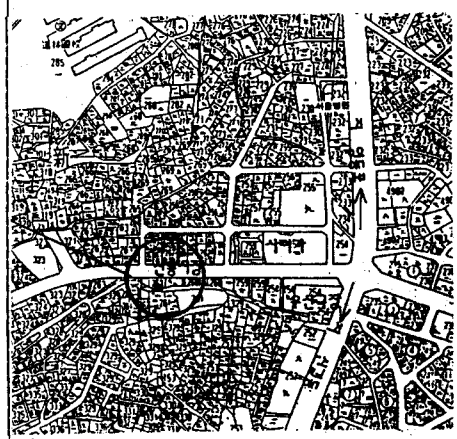
3. 매 각 사 유

- 상기 구유 재산을 매수신청인(조연제)의 주택상가 건물로 점유사용
- 20년 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음
- 점유자가 신축코자 매수 신청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호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2호

5. 현 황 도

<p>범 례</p> <p>공유지 :</p> <p>점유부분 : (매각부분)</p> <p> 담장선 :</p>		
--	---	--

연 번 : 18

(매 각 대 상 재 산 현 황)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단위 : m²)

재 산 의 표 시			매 각 대 상 적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주 소	성 명	
대림3동 604-131	대지	106	106	영등포 대림동 604-131	이 해 중	

2. 재산 관리 현 황

관 리 상 태 (현 용 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주거용 건물로 점유 사용	준공업지역으로 4m 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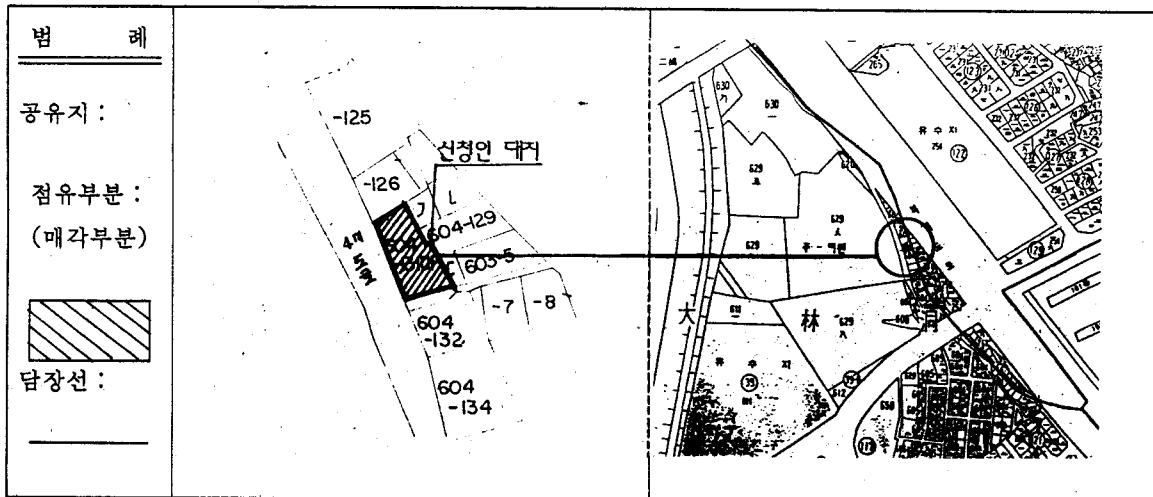
3. 매 각 사 유

- 상기 구유 재산을 매수신청인(이해중)이 주거용 건물로 점유 사용
- 20년 이상 점유(특정건축물 신고 등재)
- 점유자가 건축코자 매수 신청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호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호

5. 현 황 도



연 번 : 19

(매 각 대 상 재 산 현 황)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단위 : m²)

재 산 의 표 시			매 각 대 상 면 적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주 소	성 명	
신길6동 475-2	대지	184.6	184.6	동작 대방동 395-2	안 성 기	

2. 재 산 관 리 현 황

관 리 상 태 (현 용 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주차장으로 점유 사용	일반 주거지역으로 8m 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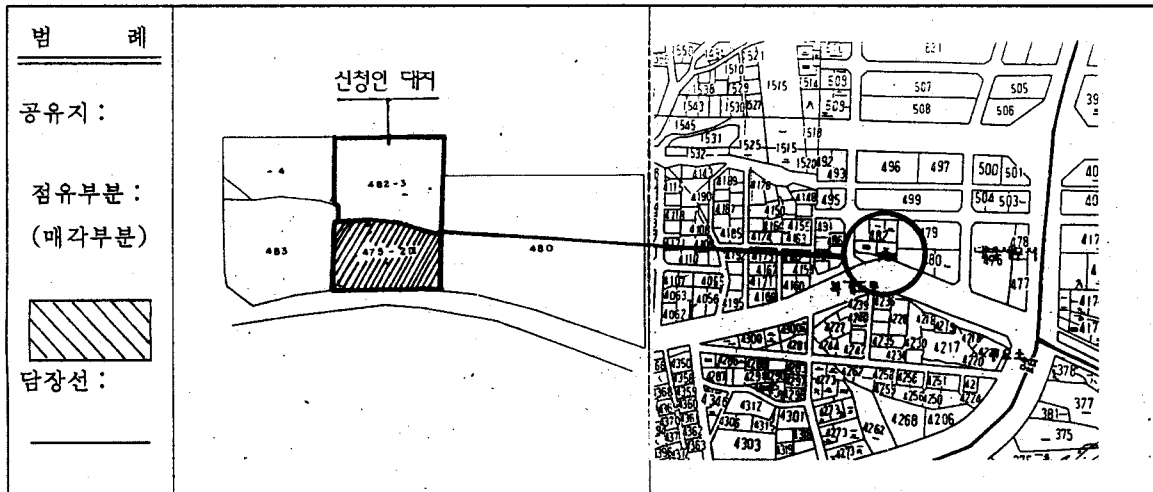
3. 매 각 사 유

- 상기 구유 재산을 매수신청인(안성기)이 나대지(주차장) 상태로 점유 사용
- 20년 이상 점유(특정건축물신고등제)
- 점유자가 건축코자 매수 신청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4호, 제7호.

5. 현 황 도



연 번 : 20

(매 각 대 상 재 산 현 황)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단위 : m²)

재 산 의 표 시			매 대 각 상 적 면 적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주 소	성 명	
신길동 342-146	대지	27	15	영등포 신길동 422-10	김 정 의	

2. 재산 관리 현 황

관 리 상 태 (현 용 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점유인의 주거용건물 및 담장안에 위치	일반주거 지역으로 6m 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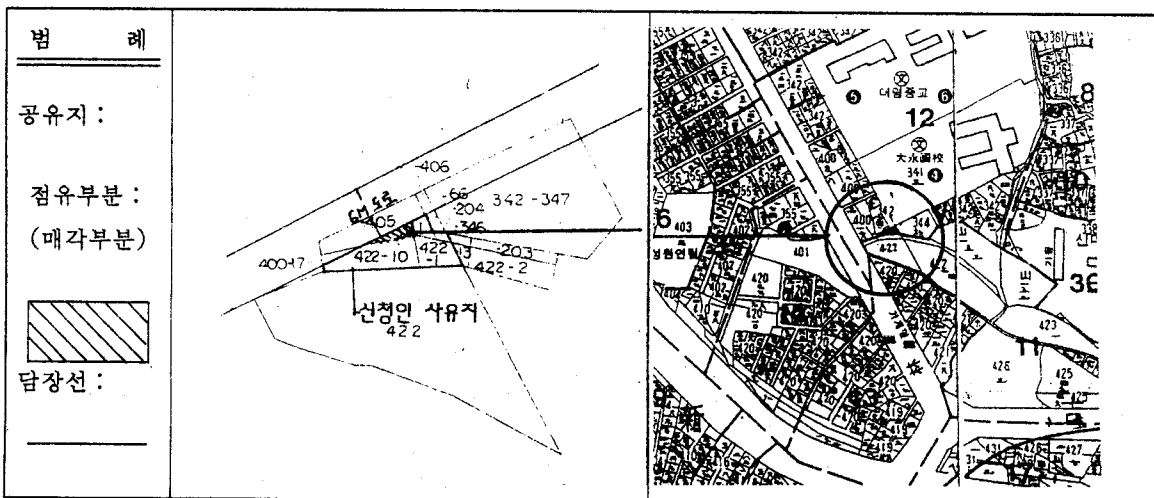
3. 매 각 사 유

- 상기 구유 재산을 매수신청인(김정의)이 주거용 건물 및 담장안에 점유 사용
- 30년 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음(무허가 건축물 신고 등재)
- 점유자가 신축코자 매수 신청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호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호

5. 현 황 도



연 번 : 21

(매 각 대 상 재 산 현 황)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단위 : m²)

재 산 의 표 시			매 각 대 상 면 적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주 소	성 명	
신길동 342-146	대지	27	12	영등포 신길동 310-38	황 인 환	

2. 재산 관리 현황

관 리 상 태 (현 용 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점유인의 주거용건물 및 담장안에 위치	일반주거 지역으로 6m 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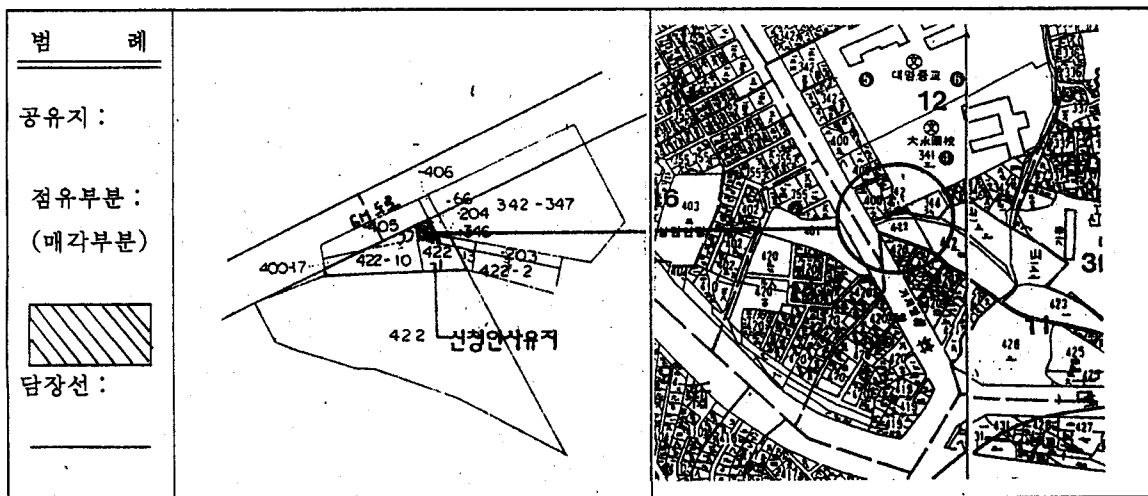
3. 매 각 사 유

- 상기 구유 재산을 매수신청인(황인환)이 주거용 건물 및 담장안에 점유 사용
- 15년 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음(무허가 건축물 신고등제)
- 점유자가 신축코자 매수 신청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호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호

5. 현 황 도



연 번 : 22

(매 각 대 상 재 산 현 황)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단위 : m²)

재 산 의 표 시			매 각 대 상 적 면 적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주 소	성 명	
신길1동 8-52	대지	18	18	영등포 신길동 8-16	조 경 목	

2. 재산 관리 현황

관 리 상 태 (현 용 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점유인의 주거용건물 및 담장안에 위치	일반주거 지역으로 6m 도로에 접함	

3. 매 각 사 유

- 상기 구유 재산을 매수신청인(조경목)이 주거용 건물 및 담장안에 점유 사용
- 30년 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음(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
- 점유자가 신축코자 매수 신청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호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2호

5. 현 황 도

<p>범 례</p> <p>공유지 :</p> <p>점유부분 : (매각부분)</p> <p>담장선 :</p>		
---	--	--

연 번 : 23

(매 각 대 상 재 산 현 황)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단위 : m')

재 산 의 표 시			매 각 대 상 면 적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주 소	성 명	
신길3동 223-63	대지	36	36	영등포 신길동 224-24	현 속	

2. 재산 관리 현 황

관 리 상 태 (현 용 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점유인의 주거용건물 및 담장안에 위치	일반주거 지역으로 3m 막다른 골목에 접함	

3. 매 각 사 유

- 상기 구유 재산은 매수신청인(현속)이 주거용 건물 및 담장안에 점유 사용
- 10년 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음(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
- 점유자가 신축코자 매수 신청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호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호

5. 현 황 도

